

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(定款)변경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1월 01일
제출자 : (재)세종문화회관 사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정관 상 '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및 의무이행에 관한 법률'에 따른
조항 마련
-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
 -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안내 (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-3724호, 20.03.16.)

2. 주요내용

- 가. 결산 관련,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
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 공개한다는 내용 추가 <37조 ④항>
- 나.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유사비영리, 공익
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 추가 <제40조>

3. 신규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결산)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</p> <p>②법인은 결산완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,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p>제37조(결산)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</p> <p>②법인은 결산완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,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④ <u>회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<신설 2020.00.00></u></p>
<p>제40조(잔여재산의 귀속)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</p>	<p>제40조(잔여재산의 귀속)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<u>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</u> 기증한다<개정 2020.00.00></p>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

- 1)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(20.02.11. 개정)
- 2)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
(서울협치담당관-3724호, 20.03.16.)
- 3) 전문예술법인·단체지정·육성제도 지정혜택 변경 안내
(서울시 문화예술과-6540, 20.04.23.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이사회 의결 예정

붙임 1.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1항바목

제39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 ①법 제2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(2020.2.11.)

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부금단체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바목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.

바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"이라 한다), 비영리외국법인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이 조에서 "사회적협동조합"이라 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(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.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.

붙임 2.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(서울협치담당관-3724호, 20.03.16.)

"작은 참여, 큰 변화, 서울민주주의위원회"

서울민주주의위원회

서울시 홈페이지
seoul.go.kr

수신 수신자참조
(경유)
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

1. 국세청 법인세과-763(2020.03.1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금년 점검대상 기부금단체(2014년 ~ 2019년 지정단체)에 대한 점검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위하여, 각 부서에서는 대상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2020.6.30.(화)까지 국세청으로 홍보(공문 또는 홈택스 전자제출)하시기 바랍니다.
※ 2020년 변경사항(붙임 점검안내 참조)

구분	종전	개정
의무이행 보고 및 점검대상	기재부진관 지정 기부금단체 (한국학교,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제외)	기재부진관 지정 기부금단체 (한국학교,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포함)
	-	당연지정기부금단체 추가 (사회복지법인, 학교 등)
점검주기	2년	매년
점검대상기간	매년 1. 1. ~ 12. 31.	사업연도
기부금단체의 주무관청 보고기한	매년 3. 31.	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
기부금단체 사후관리	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	<좌동>
	-	당연지정기부금단체 2회 이상 의무이행 시 명단공개 대상

3. 올해부터는 **당연지정기부금단체**도 점검대상에 포함되므로, 그 현황을 2020. 3. 20.(금)까지 국세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국세청에서 개최하는 기부금단체 관련 유관기관 설명회를 안내해 드리니 참석을 희망하는 직원은 3. 27.(금)까지 서울협치담당관관 이메일 (codejki@seoul.go.kr)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○ 일시 및 장소 : 2020. 4월중,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
○ 설명회 내용 : 기부금단체 관련 최근 세법개정사항, 의무이행 점검제도 등

붙임 1. 국세청 공문 1부.
2. 기부금단체 점검 안내 1부.
3. 홈택스 기부금단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매뉴얼 1부.
4. 의무이행 대상 단체 리스트 1부.
5. 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. 끝.

서울민주주의위원회

수신자 서울과01-165

주무관 국의공공기록관리국 서울협치담당관

발조자

시행 서울협치담당관-3724 (2020. 3. 16.) 정수 문화정책과-4530 (2020. 3. 17.)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(태평로1가) /
전화 02-2133-6560 /전송 02-768-8899 / codejki@seoul.go.kr /부분공개(7)

<기부금단체 의무사항>

(舊법인세법 시행령 §39 ⑤⑧, §38 ⑧⑪)

1.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(정관에 명시 포함) 등
2. **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(정관)**
3. **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(정관) 등**
4.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
5. 기부금단체 명의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
6.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%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
7. 고유목적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
8. 결산서류 등을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(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)
9.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(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법인)

붙임 3.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육성제도 지정혜택 변경 안내 (서울시 문화예술과-6540, 20.04.23)

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니다.



서울특별시

접수번호	576	접수일자	2020.5.12	사 장
처리부서	문화재단팀	담당자	김정미	페이지
당	팀 장	본부장		
김경원	전경		seoul.go.kr	기 관 사 장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**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·육성제도 지정혜택 변경 안내**

1.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기업성장지원팀-273호(2020.04.22.)와 관련입니다.
2.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개정 2020.2.11.) 및 기획재정부 고시(제2020-7호, 2020.3.31.)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관련 문의 : 예술경영지원센터 기업성장지원팀 ☎ 02-708-2267

붙임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·육성제도 지정혜택 변경안내 1부. 끝.

예술경영지원센터 기업성장지원팀
 전문예술법인단체 담당자(이현우) 번호 변경
 (전) 02-708-2267
 -> **(현) 02-708-2248**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(서울시) 전문예술법인, 전문예술단체

주무관 양승희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4/23 김인숙

협조자

김경원 (2020.4.23.) 접수 문화재단팀-466 (2020.5.8.)
 시행 문화예술과-6540
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,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/ 1동 4층
 전화 02-2133-2560 / 전송 / songhui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<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·육성제도> 지정혜택 변경 안내

1.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“전문예술법인·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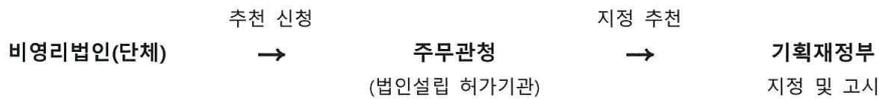
2.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개정 2020.2.11) 및 기획재정부 고시(제2020-7호, 2020.3.31.)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정기부금단체 당연 지정의 내용이 변경된 바, 관련 내용을 해당 법인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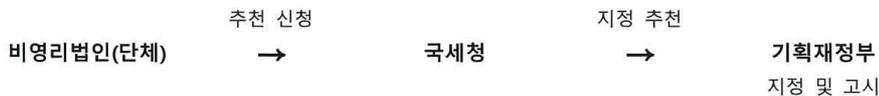
구분	변경 전(~20.12.31.)	변경 후(21.1.1.~)
	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 해제 유예기간	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 해제
전문예술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유예대상 : '18.1.1 이전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● 유예기간 내 미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가능 ●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, 주무관청 기획재정부로 관련 추천 내용 제출 (지정 희망 시, 분기별 신청) ● 지정 유효기간 : 6년 (만료 후 재신청 필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적용대상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● 국세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,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로 관련 추천 내용 제출 (지정 희망 시, 분기별 신청) ● 사후관리 : 국세청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 ● 지정 유효기간 : 3년 (만료 후 재신청 필요, 재지정 시 6년으로 확대)
전문예술단체	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 유지	
	지정기부금의 범위 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)	
	34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 7 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	

나.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 절차

1) 변경 전(~20.12.31.)



2) 변경 후('21.1.1.~)



3. 당연지정 기부금 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확인 바랍니다. (<https://blog.naver.com/ntscafe/221861429495>) 끝.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



수신자 서울특별시(문화예술과장), 부산광역시(문화예술과장), 대구광역시(문화예술정책과장), 인천광역시(문화예술과장), 광주광역시(문화도시정책관), 대전광역시(문화예술정책과장), 충청북도지사(문화예술산업과장), 울산광역시(문화예술과장), 충청남도지사(문화정책과장), 경기도지사(예술정책과장), 전라북도지사(문화예술과장), 전라남도지사(문화예술과장), 경상북도지사(문화예술과장), 경상남도지사(문화예술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문화정책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문화예술과장), 강원도지사(문화예술과장)

주임 이현우 팀장 신보연 본부장 김혜진 대표 04/22 김도일

협조자

시행 기업성장지원팀-273 (2020.04.22.) 접수 문화예술과-6414 (2020.4.22.)
우 03082 서울 종로구 대학로 57 (연건동, 흥익대학교대학로 / http://www.gokams.or.kr/
캠퍼스) 교육동 3층, 12층 / aurora@gokams.or.kr / 대시민공개
전화 02-708-2267 /전송